

새마을교통봉사대 충주시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대는 새마을교통봉사대 충주시지대(이하“본대”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대는 지역사회 발전과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자율질서의식을 확립하여 새마을운동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향목표) 본대가 지향하는 사업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진교통문화를 이끄는 [교통문화운동]
2.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문화운동]
3. 주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운동]
4. 범죄 재난을 예방하는 [지역안전운동]

제4조(사무소) 본대의 사무소는 충주시에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본대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새마을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2.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자율질서계도 활동 및 의식함양
3. 대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활동
4.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6조(운영원칙) 본대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2장 대 원

제7조(대원) 본대의 대원은 새마을정신에 입각한 봉사활동에 뜻이 있는 자로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교통봉사대 회칙에 찬동하여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로 한다.

제8조(대원의 권리) 본대 대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본대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대원의 의무) 대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의무를 진다.

1. 새마을교통봉사대 회칙 및 제규정의 준수
2. 회칙 및 제규정의 준수
3. 각종 회의 참석 및 의결사항 준수

4. 본대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10조(상벌) ① 교통봉사대의 목적사업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단체포함)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 포상을 제외한 포상에 대해서는 공적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대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는 공적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본대 대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임원선출과정에서 회칙에 위배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적법 절차 없이 임의로 기금, 회비 등의 공금을 유출했을 때
3. 건강 등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4. 대원으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5. 대원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본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을 때
6. 본대 대원으로서 제 9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③ 징계는 주의, 경고, 해임 및 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

④ 본대는 총회, 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제명된 대원은 그 의결일로부터 본대 및 지구대등 관련 직위(일반 대원 포함)가 해제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본대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 장 1인
2. 부대장 2인
3. 운영위원 15인 내외(대장, 부대장, 본대부장 포함)
4. 감 사 2인

제12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본대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임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③ 대장과 선출된 임원의 임기의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다음날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개최되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④ 대장의 자격(입후보자)은 전·현직의 대원이거나 본대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다만, 각급단위 대장으로 재임중인 자가 본대 대장으로 입후보할 경우에는 현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본대의 대장은 산하 대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사임 및 수리) ① 본대 대장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대 대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본대 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사임서는 접수와 동시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대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본대를 대표하고 읍·면·동지구대를 지도 감독하고 총회 의장이 된다.

② 부대장은 대장을 보필하며 대장 유고시에는 부대장 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교통봉사대의 세입 및 세출 재정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④ 대장, 부대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문제의 사안을 대처한다.

제15조(명예대장, 고문, 자문위원) ① 본대 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명예대장,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대장, 고문은 본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인사를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③ 명예대장과 고문은 본대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④ 명예대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본대) ① 본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획부, 총무부, 조직부, 동원부, 홍보부, 지도부, 교육부, 복지부, 체육부, 부녀부 등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할 수 있다.

② 각부의 부장 외에 1인의 차장을 둘 수 있다.

③ 각부의 부장은 대장이 임명하고 차장은 부장의 추천을 받아 대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 ① 총회는 본대 대장 및 대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되 그 일시 및 장소는 대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장이 소집 한다.

1. 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소집의 청구를 할때
3. 대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③ 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대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청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대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 대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9조(의장) ①총회 의장은 본대 대장으로 한다.

- ② 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대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③ 본대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은 총회 대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임시총회 소집 요구 시 소집 요구 대원의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변경과 회원의 제명 및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대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임원 선임시 임시의장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본대와 대원간의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대원은 의결권이 없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원의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대장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의하여 출석대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의 의사록) 총회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출석대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선임과 해임
4. 대원의 제명
5. 기타 본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23조(운영위원회) ① 본대 운영전반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본대의 대장, 부대장을 포함한 운영위원, 감사로 구성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대 운영전반에 대해 관리 경계와 임원 위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개정에 관한 심의
5.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7.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8.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10. 기금조성 및 기금과 관련되는 사항
11. 포상 최종 심사 사항
12. 기타 본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장이 소집한다.

1. 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대장은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그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시 구두나 기타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대와 대원간의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대원은 의결권이 없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대장과 대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출석 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6장 윤리위원회

제27조(윤리위원회) ① 본대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본대 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대장, 감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총무부장, 조직부장을 당해 윤리위원회에 한하여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③ 본대 대원으로서 제9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봉사대원으로서의 품위 및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④ 징계는 주의, 경고, 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은 총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⑤ 제명된 대원은 제명당일부터 산하봉사대 관련 직위(일선 봉사대원 포함)가 해제된다.

제28조(기능)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포상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징계처분(경고 해임)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제명을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본대 산하 읍·면·동 지구대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요구한 사항

제29조(회의 및 의결)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읍·면·동 지구대에서 재심을 요구하였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윤리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윤리위원 중 징계사유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징계를 받은 자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대장에게 제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산 하 조 직

제30조(산하조직) 본회 산하에 행정구역 단위로 다음 각호의 조직(이하 “산하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교통봉사대 읍·면·동지구대(이하 “지구대”라 한다)

제31조(지도·감독) ① 본대는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할 수 있다.

② 본대는 산하조직에 대하여 그 운영상의 중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본대는 총회에서 의결된 회칙 및 제규정에 관한 세칙을 시달 할 수 있다.

제32조(지구대장의 인준) ① 읍·면·동 지구대장은 본대 대장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읍·면·동 지구대장으로 인준하지 아니한다.

1. 본대 회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의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새마을운동중앙회 임원선거 규정 제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

3. 본대(산하 지대, 지구대포함)와 중앙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의 징계로 해임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경고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장 재 정

제33조(재산의 구분) ① 본대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특별기금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4조(특별기금) ① 제33조 제2항의 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조성한다.

1. 개인 및 단체의 출연금, 기부금

2. 대원의 특별회비

3.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5조(회계년도) 본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세입 세출) 본대의 세입 세출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및 지원금

2. 대원의 회비

3. 개인 및 단체 찬조금/협찬금

4. 기타 수입

제3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산 등) ① 본대 대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대 대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38조(해산) 본대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새마을교통봉사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 수 있다.

제39조(법령준용 및 규정제정) ①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②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본대에서 제정하여야 할 규정으로서 새마을교통봉사대 규정과 특히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새마을교통봉사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회칙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